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안	2.54
번호	

제출년월일 1996. 6. 6.

제출자 영주시장

1. 제안이유

동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1995. 12. 6. 법률 제4993호)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게 동조례를 전문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수방단의 임무(안 제2조)

- 방재시설 및 재해위험시설의 사전 점검·정비
- 재해위험지구의 지정·정비
- 재해응급 대책
- 방재의 날 행사참여 등

○ 수방단의 조직(안 제3조)

○ 수방단의 편성(안 제5조)

- 본부 및 경계반 : 10명 내외
- 복구반 : 30명 내외
- 구호반 : 10명 내외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 덧붙임

- 조례 표준안 1부
- 관련법규(발췌) 1부.

영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영주시수방단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주시수방단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영주시수방단(이하 “수방단”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
-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 법 제36조 제1항의 재해응급대책
- 법 제23조 제3항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참여
-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① 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 기타 시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제1호의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1.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
2. 고교생 및 대학생
3. 경찰관 및 군인
4.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제4조(단장) ① 단장은 단원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

제5조(편성)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및 경계반 : 10명 내외
 - 가. 주민대피 유도
 - 나. 재해유관기관간의 연락유지
 - 다.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 라.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 마. 기타 다른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복구반 : 30명 내외
 - 가.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 나.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 다.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
 - 라. 재해지구의 정리·정돈

3. 구호반 : 10명 내외

- 가.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
- 나. 사망자·부상자등 인명피해자 조치
- 다. 재해발생지역의 방역실시
- 라. 담요등 구호물자 조달

제6조(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① 시장은 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영주시수방단 편성 및 소집현황

식 · 구조문 대비표
(영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대책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내의 재해위험 우려가 있는 지역(이하 "재해위험지구"라 한다)에 동·리 또는 자연부락 단위로 수방단을 설치한다. 다만, 동·리 또는 자연부락 규모에 따라 2개 이상의 수방단을 설치하거나 인근 2개 이상의 동·리 또는 자연부락을 합하여 1개의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p> <p>제3조(기능) 수방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상 및 재해의 예보 또는 경보의 전달 2. 하천제방, 댐, 제방, 수문, 도로, 교량, 하수도, 축대 기타 재해위험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예찰 및 	<p>제1조(목적) 이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영주시수방단(이하 "수방단"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임무)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제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 2.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3. 법 제36조 제1항의 재해응급대책 4. ▶ 제23조 제3항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참여 5.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p>제3조(조직) ①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현 행	개 정 안
<p>3. 재해위험 지구에 있어서의 피난을 위한 시설의 설치 조립 및 복구와 장애물 등의 제거</p> <p>4. 재해방지 및 구조</p> <p>5. 시설 또는 설비의 응급복구</p> <p>6. 방역과 방범 기타 질서의 유지</p> <p>7. 방재의식 계몽 및 전파</p> <p>8.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p> <p>제4조(조직) ① 1개 수방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단원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재해위험 지구에 거주하는 자 2. 방재와 관계있는 기관 및 기업체 소속직원 3. 기타 시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p>③ 단장은 단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p> <p>④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업무를 총괄하여, 수방단을 대표한다.</p> <p>⑤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장소속하에 본부 및 경계반,</p>	<p>3. 기타 시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② 제1항 제1호의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 2. 고교생 및 대학생 3. 경찰관 및 군인 4.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p>제4조(단장) ① 단장은 단원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p> <p>②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p>

현 행	개 정 안
<p>복구반, 구호반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반에 두는 인원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부 및 경계반 : 10명 내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상 및 제한의 예보 또는 경보의 전달 나. 주민대피의 안내 다. 재해 유관기관과의 연락유지 라. 주민의 통제 마. 재해위험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2. 복구반 : 30명 내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점검조치 나. 재해시설물의 긴급복구 다. 각종장비 및 자재의 동원 라. 재해지구의 정리정돈 3. 구호반 : 10명 내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재해민의 식량보급 나. 사망자, 부상자 등 인명피해자 조치 다. 재해발생지역의 방역실시 라. 담요 등 구호물자 조달 마. 기타 이재민의 사후 처리 <p>제5조(수방단원에서 제외될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p>	<p>제5조(편성)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p>

현 행	개 정 안
<p>없다.</p> <p>1. 17세 미만 60세 이상인 자</p> <p>2. 고교생 및 대학생</p> <p>3. 경찰관 및 군인</p> <p>4. 기타 시장이 판단하여 활동이 불가능한 자</p> <p>제6조(교육 및 훈련) 시장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1회 이상 수방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게하여야 한다.</p>	<p>라 편성된 각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p> <p>1. 본부 및 경계반 : 10명 내외 가. 주민대피 유도 나. 재해유관기관간의 연락유지 다.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라. 재해위협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마. 기타 다른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p> <p>2. 복구반 : 30명 내외 가.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조치 나.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다. 각종장비 및 자재의 동원 라. 재해지구의 정리·정돈</p> <p>3. 구호반 : 10명 내외 가.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 처리 나. 사망자·부상자 등 인명피해자 조치 다. 재해발생지역의 방역실시 라. 담요 등 구호물자 조달</p> <p>제6조(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①시장은 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자체 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1. 단원의 긴급 동원</p> <p>2. 기상 및 재해의 예보 전달</p> <p>3. 재해 위험 지구와 관계기관과의 연락</p> <p>4. 피난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응급복구나 장애물 등의 제거</p> <p>5. 고립자, 부상자, 의사자 및 표류자 등의 구조</p> <p>6. 방역과 방범 기타 질서의 유지</p> <p>7. 방재의식의 계몽 및 전파</p> <p>8.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p> <p>제7조(동원 절차) 풍수해대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수방단원을 동원할 때는 시장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해 소집통보서를 수방단장에게 교부해야 하며 수방 단장은 즉시 당해 단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p> <p>단, 소집통보서를 교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마이크, 전화 등 유선시설을 이용하고, 통지서는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다.</p> <p>제8조(응소결과 보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원을 동원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동원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곧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하며 응소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7조(운영세칙)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p><삭 제></p>

의 행	개 정 안
<p>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 제></p>



“관 인 생 략”
경 상 북 도

우 702-702 대구 북구 산격동 1445-3 / 전화(053) 950-3643 / 전송(053) 950-3649 / 담당 현 기 백

문서번호 치수 13930 - 819

시행일자 1996. 7. 20. (3 년)

경 유

받 음 받는곳 참조

참 조 건설과장

선 결	시 기	지 시	
접 접	일자 시간	956. 07. 22	결 부 시자
수 수	번호 번호	444	재 국 장
	처 리 과		공 파 장
	담 당 자	1003	람 계 장

제 목 조례제정 및 개정 표준(안) 통보

1. 재대본 13930 - 221('96. 7. 15) 호의 이첩입니다.

2.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 제정 표준(안)과 수방단운영조례 개정 표준(안)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니 조속한 시일내 제정 또는 개정하여 앞으로 재해 대책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불 임 : 1.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제정 표준(안) 1 부.
2.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 표준(안) 1 부. 끝.

경 상 북 도 지 사

치수과장 전 결

수방단운영조례개정표준 (안)

(시·군·구)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군·구)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법제 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
-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 법제 36조제1항의 재해응급대책
- 법제 23조제3항과 영제 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참여
-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제3조 (조직) ① 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제1항제1호의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
 - 고교생 및 대학생
 - 경찰관 및 군인
 -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제4조 (단장) ① 단장은 단원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

제5조(편성)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및 경계반 : 10명 내외

- 가. 주민대피 유도
- 나. 재해유관기관간의 연락유지
- 다.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 라.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 마. 기타 다른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복구반 : 30명 내외

- 가.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 나.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 다.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
- 라. 재해지구의 정리·정돈

3. 구호반 : 10명 내외

- 가.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
- 나. 사망자·부상자등 인명피해자 조치
- 다. 재해발생지역의 방역실시
- 라. 담요등 구호물자 조달

제7조(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영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자 료(관련법규 발췌)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수방단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이하 "수방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재해예방) ① 방재책임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방재조직의 정비
2. 방재교육·훈련 및 재해예방에 관한 홍보
3. 방재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 및 정비
4. 방재시설의 점검·정비
5. 재해위험시설의 점검·정비
6.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정비
7.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④ <생략>

제36조(재해순응대책) ① 방재책임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2. 수방·지진방재·진화 기타의 응급조치와 구호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4. 방역과 방범 기타 질서의 유지
 5. 긴급 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
 6. 급수수단의 확보
 7. 기타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생 략>

제23조(방재교육 훈련 및 홍보) ① ~ ② <생 략>

③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재의 날”을 정하여 재해예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방재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25조(방재의 날 행사) ①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하여 재해취약요인 일제점검, 방재훈련 및 방재 행정세미나등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② 중앙재해대책본부장 및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은 국민의 방재의식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재의날 행 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2조(수방단의 설치기준등) ①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이하 “수방단”이라 한다)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통·리 또는 자연부락별로 설치한다. 이 경우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리 또는 자연부락의 규모에 따라 하나의 통·리에 2이상의 수방단을 설치하거나 2이상의 통·리 또는 자연부락을 합하여 하나의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3조(수방단의 조직기준)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을 담해 지역의 주민으로 조직되며, 단장 1인을 포함한 단원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방단에 본부 및 경계반·복구반·구호반 등을 둔다.

제14조(수방단의 교육훈련 및 소집) ① <생 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방단원을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수방단원소집통지서를 수방단장에게 교부하고, 수방단장은 즉시 당해 단원들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방단원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비상소집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